

<h1>보도자료</h1> <p>2024. 2. 16.</p>		<h2>양형위원회</h2>
	<p>문의</p>	<p>운영지원단장 범선윤 (☎ 02-3480-1924)</p>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9차 공청회 개최

### - 지식재산 · 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

### 양형기준안 대상 -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2024. 2. 16.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19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함

#### ① 공청회 개요

- 일시 : 2024. 2. 16.(금) 14:00 ~ 18:00
- 장소 : 대법원 1층 대강당
- 방청 : 현장 방청 및 온라인 생중계(대법원 유튜브 채널)
- 사회 : 최 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 발표 : 김세종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지정토론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

- 최승재 (변호사·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 최성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장)
- 김웅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 이승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윤희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김재영 (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감)

###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 이재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독성학과장)
-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
- 김윤주 (서울고등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② 양형기준안 개요

- 각 양형기준안과 그 설명자료는 공청회 자료집 참조[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공청회·공개토론회' 탭 - '공청회' 탭에서 다운로드 가능]

## ③ 공청회 지정토론 요지

\* 지정토론문 원문은 공청회 자료집 참조

###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1. 유형 분류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은 **기존의 양형기준에 없던 '산업기술 등 침해 행위'를 별도의 유형으로 신설**하였는데, 영업비밀은 '기업의 사익'에 해당하나 산업기술은 정부가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를 해야 한다고 인정하여 개별법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한 기술로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기술로서 '국가적 이익'에 해당함을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는 의견(최성준 과장)**이 있었음

#### 2. 권고 형량범위

☞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기초로 관련 특별법의 형량을 고려해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보다 형량을 더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비밀 침해행위'보다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의 권고 형량이 전반적으로 더 높다는 방향성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최성준 과장)**이 있었음

☞ 반면, ①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존보다 상향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형량범위를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보다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② 법정형과 행

위태양이 거의 동일하고 범행의 객체에 차이가 있을 뿐인 **산업기술 침해범죄와 영업비밀 침해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달리하여 산업기술 침해범죄의 형량을 규범적으로 더 상향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김웅재 교수)**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는 **다른 지식재산권범죄와는 달리 기술침해범죄는 개인적 법익을 넘어서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점 등에서 양형기준의 규범적 상향이 필요하며, 이것이 입법자의 의사에도 부합하고, 비록 영업비밀 침해범죄와 산업기술 침해범죄의 법정형이 동일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 및 각종 특별법 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술침해범죄는 국가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적 성격이 강하므로 양자 사이의 불법성에는 차이가 있다는 답변(최호진 전문위원)**이 있었음

☞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4-4유형)의 기본영역 상한과 가중영역 상한을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최성준 과장)**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는 형량범위는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설정하되,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하여 정하고 있는데,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유형은 양형사례가 없어 법정형이 동일·유사하고 구성요건이 유사한 양형기준을 참고하되 그보다 높게 설정되었고, 향후 양형사례가 축적되는 추이를 지켜본 후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최형준 전문위원)**이 있었음

### 3. 양형인자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에서 자수 관련 특별감경인자를 등록권리와 비등록권리를 구별하여, **등록권리의 경우에는 내부고발이 별다른 의미가 없으므로 '자수'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영업비밀 등 비등록권리는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로 설정하자는 의견(최승재 변호사)**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등록권리 침해행위, 저작권 침해행위의 경우에도 예컨대 범행 고의 등을 부인할 때 범죄 가담자의 협조가 있는 경우 범죄 입증에 용이할 수 있고, 외국에서 생산된 위조품 등을 수입·운반·판매하는 조직적인

범행 등에서 실익이 있을 수 있으며, 하나의 범죄군에서 동일한 양형인자를 대유  
형별로 각기 다르게 설정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운 점들을 고려하면 **등록권리 침  
해행위, 저작권 침해행위 유형에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다른 유형과 마찬  
가지로 자수 관련 양형인자를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김한울  
전문위원)**이 있었음

☞ 특허권 등 등록권리 침해범죄에서 권리의 범위나 유·무효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  
고,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침해범죄의 경우에도 침해대상 비밀 내지 기술의 범  
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심급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  
므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를 감경인자 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김웅재 교수)**  
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의 경우 행위불법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다  
른 범죄군에서도 감경인자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토론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답  
변이 있었음(최호진 전문위원)**

##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1. 설정 범위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대해서도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승준  
교수)**에 대하여, 전자장치 효용 침해 범죄의 경우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2024. 1. 12.부터 벌칙 조항이 시행되어 양형 실무례가 없어 형량범위 설정이나  
양형인자 추출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이유로 이번에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  
나, 추후 양형실무례가 충분히 축적되면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  
을 것이라는 답변(김용민 전문위원)**이 있었음

### 2. 권고 형량범위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흥기등휴대 스토킹범죄(1-2유형)의 형량범위가 법정형  
이 동일한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구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승준 교수)에 대하여,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의 경우 양형통계를 기초로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범죄의 형량범위를 참고하되,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수성 내지 위험성, 그리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을 고려하여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범위를 다소 상향하여 설정하였다는 답변(김용민 전문위원)이 있었음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을 동일한 법정형의 타 범죄보다 높게 처벌해야 또 다른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김재영 경감)에 대하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의 위험성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양형위원회는 양형실무, 스토킹처벌법 내 타 범죄와의 정합성, 양형기준이 설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 많은 사항을 고려하여 잠정조치 등 위반의 양형기준안을 정하였고, 특히 범행 초기 행위를 엄벌함으로써 계속될 수 있는 범행을 단절시킬 필요가 있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감경구간에도 징역형을 제시하였다는 답변(김현아 전문위원)이 있었음

### 3. 형종 선택의 기준

☞ 일반 스토킹범죄(1-1유형) 가중영역에서 처벌불원의 경우에만 벌금형 선택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한 합의 시도에 따른 피해 발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벌금형의 가능 여부를 오로지 피해자의 의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스토킹범죄 가중영역에도 애초부터 벌금형을 규정하여 벌금형 선택 여부를 법관의 재량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최운희 변호사)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양형요소인 점 등을 고려한 것이고, 피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해 무리한 합의를 시도하다가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는 공감하나, 그러한 우려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중영역에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오히려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답변(정현주 전문위원)이 있었음

☞ 잠정조치 위반(2-2유형)의 가중영역에서 잠정조치 위반은 법원의 공권적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사회적 법익 침해의 성격이 강한데 ‘처벌불원’을 벌금형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의견(최운희 변호사)에 대하여, 잠정조치 위반은 법원의 조치를 위반한 것이나, 피해자의 안전 등 개인적 법익도 잠정조치 위반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익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답변(정현주 전문위원)이 있었음

#### 4. 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관련하여, ‘비교적 단기간이라도 집요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도 양형인자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김재영 경감)에 대하여, 스토킹 기간이 짧지만 심각한 경우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김현아 전문위원)

☞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피해자가 자상이나 자살을 시도한 경우’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시켜야 하고, 그 객체도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이외에 친구, 직장동료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승준 교수)에 대하여, 위 양형인자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상이나 자살을 시도한 경우’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피해자의 친구나 직장동료의 경우도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양형인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답변(김용민 전문위원)이 있었음

☞ 소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피해자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양형인자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김재영 경감)에 대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는 디지털 성범죄 등 다른 범죄군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토론자의 의견처럼 스토킹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밀접한 관계’ 등에서의 특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김현아 전문위원)이 있었음

## 5. 집행유예 기준

☞ 통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아 이를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고려할 수 있지만, 스토킹범죄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김재영 경감)에 대하여, 위 의견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유대관계’는 대부분의 범죄에서 일반참작사유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 전체의 정합성 및 통일성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해보겠다는 답변(김현아 전문위원)이 있었음

### ▣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1.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유형(2-나) 신설 관련

☞ 과거와 달리 최근의 마약 거래는 상당 부분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약 판매자가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여부를 알고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설 유형을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김윤주 변호사)에 대하여,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젊은 층에서 마약류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고, 10대 청소년들도 SNS, 해외직구 등을 통해 손쉽게 마약에 접근하면서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을 고려하면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 유형으로 신설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고, 개별 사례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마약 판매자가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알고 거래하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관련 증거들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이 입증된다면 신설된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유형으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답변(김한울 전문위원)이 있었음

#### 2. 대마수출입 유형 재분류 관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마수출입 등 범죄에 대해 추가적인 가벌성과 위험성을 지적한 것은 아닌 점, 대마의 수입으로 인정되는 행위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고, 대마의 위험성과 중독성이 비교적 낮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김윤주 변호사)에 대하여, 대

마의 사회적 피해가 크므로, 대마수출입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3-3유형으로 재분류한 것은 적절하고,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은 양형인자를 통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김한울 전문위원)이 있었음

### 3. 마약 치료 및 사회복귀 관련

☞ ① 처벌과 함께 치료와 사회복귀 활동기간이 양형기준에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재신 과장), ② 마약범죄 적발 시점으로부터 선고 시점까지 적극적인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단약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이를 감경인자로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하고, 수용 기간 동안 교정 시설 내에서 마약류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한 치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천영훈 원장)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는 ①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하여야 하므로(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2항 제2호), 위와 같은 사정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겠다는 답변(최형준 전문위원), ② 마약류 중독 사범에 대해서는 단순한 처벌이나 격리가 아닌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자수’나 ‘중요한 수사협조’가 특별감경인자로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답변(윤지영 전문위원)이 있었음

## 4. 향후 일정

###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검토 및 반영

- 양형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 예고 등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2024. 3. 25. 제130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